

#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## 제 5 장 휴학 . 복학 . 자퇴 . 제적 . 수료

**제26조(휴학)** ①질병, 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휴학은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(다만,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.

②군복무, 장기해외지사근무, 장기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중 그 증빙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,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③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복학)** 휴학한 자가 복학을 원하는 경우는 매학기 등록 개시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8조(자퇴, 제적 및 복적)** ①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
2.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
3.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4. 징계로 제적된 자

③제적된 자가 복적을 원할 때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복적할 수 있다.

④복적 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입학의 절차를 준용한다.

**제29조(수료)** 수료를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전과)**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대학원 학과 간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.